

IFRS in Focus

IASB,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과 관련하여 IFRS 1을 개정

목차

- 개정내용
- 시행일과 경과규정

요점

- 이번 개정은 IFRS 전환일에 존재하는 정부대여금에 대하여 IAS 39 또는 IFRS 9과 IAS 20 문단 10A의 규정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IFRS 1을 개정함으로써 IFRS 최초채택기업에게 면제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 이번 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개정내용

2012년 3월 13일 IASB는 IFRS 전환일에 존재하는 정부대여금에 대하여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IFRS 9 '금융상품'과 IAS 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문단 10A의 규정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IFRS 1 'IFRS 최초채택'을 개정함으로써 IFRS 최초채택기업에게 면제조치를 제공하는 '정부대여금(IFRS 1 개정)'을 발표하였다.

IAS 20 문단 10A는 무이자 또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IAS 39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IFRS 9에 따라 결정되는 정부대여금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년 5월에 발표된 연차개선의 일부로 동 규정이 도입되었을 당시 IASB는 과거에 발생한 정부대여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전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IFRS 전환일에 IFRS 소급적용이라는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IFRS 1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For more useful information please see the following website:

www.iasplus.com
www.deloitte.com

이번 개정은 IFRS 최초채택기업이 IFRS 전환일 이후에 새로 체결된 정부대여금에 한하여 IAS 20 문단 10A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간과를 수정하고 있다. IFRS 최초채택기업은 IAS 32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IFRS 전환일에 정부대여금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IFRS 규정에 부합되는 기준으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을 인식하지 않고 측정하지 않았다면,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IFRS 전환일 현재의 정부대여금의 장부금액을 개시 IFRS 재무상태표의 장부금액으로 하여 IFRS에 따른 인식과 측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IFRS 전환일 이후에는 IAS 39 또는 IFRS 9를 적용하여 정부대여금을 측정한다.

이번 개정은 특정 정부대여금에 대하여 IFRS에 따른 인식과 측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당해 정부대여금을 최초 회계처리하는 시점에 입수한 경우, IFRS 최초채택기업에게 IAS 39 또는 IFRS 9과 IAS 20 문단 10A의 규정을 개별 정부대여금 기준으로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선택권을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이번 개정에서 제공하는 면제조치를 이용하는 경우 IFRS 전환일에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회계처리를 예시하는 아래의 사례가 이번 개정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기업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특정 개발지역에서 기업의 영업활동 확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설비의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다.

기업 S의 IFRS 전환일은 20X2년 1월 1일이다.

개발계획에 따라 20X2년에 기업 S는 정부로부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CU100,000을 차입하였다.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기업 S는 해당 차입금을 자본으로 처리하였으며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 CU100,000을 IFRS 전환일 해당 차입금의 장부금액으로 하였다. 20X5년 1월 1일에 지급할 금액은 CU103,030이다.

당해 차입금의 조건에 따라 다른 어떠한 지급이 요구되지 않으며 차입금에 부수되는 어떠한 추가적인 이행조건도 없다. 당해 차입금의 공정가치 측정에 필요한 정보는 차입금을 최초 회계처리하는 시점에서는 입수되지 않았다.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은 IAS 3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부채의 정의에 부합한다. 따라서, 기업 S는 당해 차입금을 부채로 분류한다. 또한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정부대여금의 IFRS 전환일 현재 장부금액을 개시 IFRS 재무상태표상 정부대여금의 장부금액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기업 S는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 당해 차입금의 장부금액 CU100,000을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한다. IFRS 전환일 이후 해당 정부대여금을 측정하기 위해 20X2년 1월 1일에 개시되는 유효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103,030/100,000)^{\frac{1}{3}} - 1$$

$$= 1\%$$

차입금의 장부금액은 아래와 같다.

일자	장부금액(CU)	이자비용(CU)	미지급이자(CU)
20X2.1.1	100,000	-	-
20X2.12.31	101,000	1,000	1,000
20X3.12.31	102,010	1,010	2,010
20X4.12.31	103,030	1,020	3,030

시행일과 경과규정

기업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이번 개정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및 Deloitte member firms는 본 출판물에 근거한 결정에서 발생한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